

IDNYC 신청서 작성 지침

IDNYC 카드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원 증명 최소 3점 및 거주지 증명 서류 최소 1점을 포함한 서류 점수 최소 4점.
2. 신청자가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된 서류 중 최소 1부에는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3. 서류 중 최소 1부는 생년월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IDNYC 서류 작성 요령에서 특별히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료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 기관에서 인증한 원본 서류 및 사본만 인정되며, 원래 래미네이트로 코팅되어 발급된 문서에 한해 코팅된 상태로 수령합니다.

일관된 이름 사용

모든 서류에 명시된 이름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이름 변경을 입증하는 이름 변경 법원 명령, 결혼 증서 또는 기타 정부 발급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아닌 한, IDNYC 신청서에 명시된 이름은 가장 점수가 높은 신원 증빙 서류(여권, 운전면허증, 출생 증명서, 영사 ID 등)에 명시된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동일한 점수에 해당하는 신원 서류를 2부 제출하는 경우 IDNYC 신청서는 사진을 포함하고 있는 서류 상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사진이 있는 신분증 또는 거주지 증명 서류가 없는 14-21세 신청자

사진이 있는 신분증 혹은 거주지 증명 서류가 없는 14-21세 신청자는 해당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격 보호자는 친부모, 입양 부모, 의붓부모, 법적 보호인, 법적 관리인, 가정 위탁 부모, 뉴욕시 아동 복지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ACS)의 승인된 직원 또는 ACS 가정 위탁 기관, 미국 보건복지국(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난민 정착 지원실(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이 지정한 미성년자의 성인 후원자 등입니다.

사진이 있는 신분증 혹은 거주지 증명 서류가 없는 장애인 신청자

연령에 상관없이 사진이 있는 신분증 혹은 주소 증빙 서류가 없는 장애인 신청자는 해당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령의 신청자에 대한 보호자 자격에는 뉴욕주 발달 장애국(NY State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 뉴욕주 보건국(NYS Department of Health, NYS DOH), 뉴욕주 정신건강국(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 NYS OMH),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국(NYC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NYC DOHMH), 아동 복지국(ACS), 지정된 ACS 위탁 보호 기관에 소속된 승인된 직원, OPWDD, NYS OMH, NYS DOH 또는 NYC DOHMH에서 운영, 인증, 허가 또는 자금을 지원하는 거주형 치료 시설의 직원을 포함한 OPWDD, NYS DOH나 NYC DOHMH 서비스 제공자, OPWDD가 발달 장애인임을 확인한 신청자의 동거인, 또는 신청자의 사회복지 대리 수취인이 포함됩니다.

보호자와 함께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

보호자와 함께 신청하는 신청자는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최소 2점에 해당하는 신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와 보호자는 IDNYC 서류 작성 요령의 보호자 섹션에 명시된 보호자 관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포함하여 최소 3점에 해당하는 신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거주지 증명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보호자와 함께 사는 경우, 보호자는 IDNYC 서류 작성 요령에 명시된 거주 서류 중 하나로 거주지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자가 보호자와 함께 거주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보호자는 IDNYC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은 자신의 직원 ID를 제시해야 합니다.

노숙자 혹은 가정 폭력 피해자인 신청자의 거주지

노숙자 보호소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서신에 보호소 주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본인이 최소 15일 동안 해당 보호소에서 거주했고 보호소에서 최소 30일 동안의 지속 거주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카드에는 보호소 주소가 표시됩니다. 자택 주소가 없거나 가정 폭력 피해자인 신청자는 뉴욕 시내의 거주지를 증명해야 하지만, 비영리 기관이나 종교 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주소를 신청자의 보호 관리 주소로 카드에 명시하거나 카드에 주소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소가 표시되지 않거나 보호 관리 단체 주소가 표시된 IDNYC 카드는 특정 경우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NYS Address Confidentiality Program)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신청자나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NYC 보호소에 거주하는 신청자도 뉴욕 시내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들의 IDNYC 카드에는 사서함만 표시하거나 주소를 전혀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 표시

군 복무 증빙 서류를 입수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뉴욕시 재향군인 담당실(NYC Department of Veterans' Services)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담당실은 웹 사이트 www.nyc.gov/veterans 또는 전화 311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IDNYC 카드 갱신

IDNYC 카드는 카드가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은 카드가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카드 만료 후 6개월 이내까지입니다. 카드가 만료된 지 6개월 이후에 카드를 신청하는 개인은 신규 신청자로 간주합니다. 카드 갱신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IDNYC 가입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교체 카드

분실, 도난 또는 손상 카드의 교체 신청 비용은 \$10입니다(신청자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서명하거나 카드를 도난당했다는 공식 서류가 있는 경우 제외). 카드 교체 비용은 IDNYC 재무국(IDNYC Department of Finance) 가입 센터에 지불해야 합니다.